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9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여비기준을 규정하여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여비 지급 기준 신설(제2조, 별표2)
- 나. 별표를 별표 1로, 별표 중 비고4 일부 정비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22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0. 1. 9. ~ 1. 28.)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,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4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1”로 한다.

별표 중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(생 략)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 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 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 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지급한 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	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(현행과 같음) ②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 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 되,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 <삭 제>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 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	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----- ----- ----- 별표 1----- -----.

【별표 2】(신설)
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지급 대상	지급방법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	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,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,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.
	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
	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
- ※ 지급 대상 :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,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(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)
- ※ 지급액 :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,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, 업무의 특성,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

□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